

#붙임.1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서면 경남아너스빌 엔테로까사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만65세이상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 2018.10.01. 국토교통부 입주자저축에 관한 전산관리업무 지정기관 변경 고시에 따라 2020.02.01.부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인터넷 청약 접수를 하셔야 하며, 미접수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방문신청 및 동·호수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1. 수도권•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14.]에 "서면 경남아너스빌 엔테로까사" 대표번호(051-759-89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80-5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 4층, 지상 23층, 총 146세대 중 80세대
 - 일정 계획(예정)

구분	일자	참고사항
입주자모집공고	2022.10.14.(금)	청약홈
견본주택개관	2022.10.14.(금)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331-6번지
특별공급 접수일자	2022.10.24.(월)	인터넷접수 원칙 / 08:00~17:30까지
당첨자(동호수)발표	2022.11.01.(화)	http://www.applyhome.co.kr (일반공급 신청자와 동일하게 한국부동산원 전산추첨 후 게시)
계약체결	2022.11.14.(월)~2022.11.16.(수)	견본주택

- ※ 상기일정은 예정 일정이며, 관련 업무의 진행 사정상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부의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 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네이버인증서 포함)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 특별공급의 경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단, 특별공급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특별공급 구비서류'를 모두 완비 후 접수.

2.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자격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14.(금)]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 등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
 -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②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③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청약 예치금 기준액>

구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이하	300 만원	250 만원	200 만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14.(금)] 현재 무주택이어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청약홈(www.applyhome.com)에서 특별공급 신청하여야 함 [신청시 주택형 변경 불가,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 불가]
- 당첨자 발표는 일반공급 발표일에 동시 발표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당첨자로 선정 시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
- 기관추천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 타 특별공급(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 사업주체가 기관추천,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4. 특별공급 신청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및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적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건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공급지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합니다.